

중앙도서관 분실자료 변상지침

- 제정 : 2016년 3월 2일
- 개정 : 2018년 8월 28일
- 개정 : 2019년 8월 24일
- 관리부서 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자료의 분실 처리방법에 관한 도서관 규정 제40조 ‘변상방법’의 세부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 (동일자료 변상) ①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동일한 자료란 그 판본이 동일하며, 영인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자료를 의미한다.

제4조 (금액변상) 분실한 자료를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.

①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다.

1. 국내서는 정가의 2배로 산정한 가격
2. 국외서는 정가의 2배에 변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고, 1.2배로 산정한 가격
3. 위 기준에 적용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(문학작품의 초판본), 연속간행물, 고전자료 및 특수 자료의 변상대금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.
4.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본 비용을 추가한다.

②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, 1994년 이후 발행된 자료는 산정된 가격에 매년 10% 추가하여 변상한다.

1. 단행본 (비매품)

국내서: 면수 x ₩40

일 서: 면수 x ₩90

중 서: 면수 x ₩60

서양서: 면수 x ₩180

2. 학위논문: 면수 x ₩120

3. 약보: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산정

제5조 (정가) 제4조의 정가는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제6조 (변상처리) ① 자료로 변상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금액으로 변상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환불이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부 칙 1

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2

이 지침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8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